

##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업체 모집 공고(안)

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###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## □ 모집대상

1. 대상품목 :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
2. 신청대상 :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, 단체, 법인

#### <제주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>

- 명 칭: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(Jeju Island Biosphere Reserve)
- 지 정 일: 2002. 12. 16., 확대지정일 : 2019. 6. 19.(지정기관: 유네스코)
- 지정현황

핵심구역 (151.58km <sup>2</sup> )	한라산국립공원, 영천·효돈천, 문섬·범섬·쇳섬 천연보호구역 등 법정보호지역
완충구역 (146.01km <sup>2</sup> )	핵심구역을 제외한 법정보호지역 및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
협력구역 (533.35km <sup>2</sup> )	육지부 :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부 :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.5km 지역

※ 지정면적 :387,194ha (제주도 육상전역 및 5.5km 이내 해양구역)

## □ 신청방법

1. 접수기간 : 2020. 10. 16.(금) ~ 10. 30.(금) 18:00까지, 15일간
2.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
  -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72(연동), 한라수목원  
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(63143)
  - 전자우편 : indra30@korea.kr
  - 문의전화 : 064)710-6981
3. 제출방법: 우편, 전자우편(스캔본으로 한함), 방문접수
4. 제출서류: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## □ 승인가준 및 선정절차

### 1. 서류심사 승인가준

-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산여부 및 정부 친환경인증(유기농, 무농약, 친환경 수산물,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 축산물), 정부 품질인증(수산물 품질인증), 정부 우수관리인증(GAP), 제주도 품질인증마크 취득 여부 등 별도 정한 자격요건 충족(상세 사항은 5p 참조)

### 2. 선정절차

- 서류심사 ⇨ 현장실사 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심의

### 3. 선정결과 발표 : 별도 통보 및 2020년 12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

## □ 참여업체 지원내용

### 1. 제품포장 겉면에 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」 부착 허용

- ※ 참여업체는 본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인지도 향상 효과 기대


- ※ 인증 및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이며, 사용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

### 2. 상설판매장 제품 진열 판매, 전시관 이용, 박람회 참가 지원 등

## □ 기타사항

1. 접수한 서류는 어떠한 것도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제외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2. 로고 사용 승인 및 활용은 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름

## □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브랜드 아이덴티티(BI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념을 지향하고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친환경·자연친화 생산품</li></ul></li><li>○ 브랜드 비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이 선순환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구축</li></ul></li></ul>
---	---

(사용예시)



□ 붙임: 신청서식

##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	
	주소		전화번호	Tel. HP.	
	전자 메일	@	팩스번호		
생산현황	사업장소재지 (지번)				
	품 목 명				
	재배면적(ha) 사육규모				
	연간생산계획 (톤, 두수)				
인증취득현황	인증명	인증기관	인증품목	재배면적(m <sup>2</sup> )	인증취득기간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[신청인]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	
<p>[첨부서류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인증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 1부</li><li>정기검사 증명서(해당자에 한한다) 1부</li><li>가공품인 경우 : 주원료 원산지 증명서류, 제조공정상황개요서,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(해당자에 한한다)</li></ol>					

#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 승인 기준표

대상	승 인 기 준
농임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식품 및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을 취득한 자</li> <li>3.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/ol>
축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li>3. 별끌인 경우 최근 2년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생산규모가 50군 이상 인자.</li> </ol>
수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친환경수산물 및 수산물품질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3.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/ol>
천연자원	<p>대상품목 : 고사리 등 산나물류, 조릿대, 야생버섯, 약초류, 먹는샘물 천연자원을 합법적으로 채취 또는 수매하여 판매하는 자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세척·포장·유통과정에서 오염 요인이 없어야 한다.</li> <li>2.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 <li>3. 세척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li> <li>4. 포장 등 작업구역과 저장장소, 수송수단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</li> </ol>
가공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을 주원료로 (50% 이상)하여야 함. (주원료는 개별식품의 주용도,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 다른 식품이나 제품과 구별,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.)</li> <li>· 비인증 원료와 혼합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비인증 원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.</li> <li>·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li> <li>· 식품위생법, 농수산물품질관리법, 식품산업진흥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</li> </ul>